

인천지방법원 2022. 8. 24 선고 2022가단354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. 8. 3. 접수 제1254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임택준

별지